

2020년도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8. 10.(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 박정인, 이성엽(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98건(안건번호 제2020-90951호~9160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90951호는 민원인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 사이트의 다른 판매자가 이용한 사안임. 저작물의 권리자나 권리침해관계 소명이 미흡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물 내 이미지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쇼핑몰의 제품 판매 게시물에 시정권고를 할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90952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8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이성엽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64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이성엽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과 7쪽의 OSP명,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8쪽의 저작물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11쪽~12쪽의 밴드명, OSP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이나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고, 그 외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B 위원: 전차 회의록에 대해 확인하였고, 취소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함.
- C 위원: 이견 없음.
- 이성엽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

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OSP명, 밴드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일본 NTV’, ‘넷플릭스’, ‘미국 HBO’, ‘Cartoon Network’, ‘미국 FOX’, ‘EA’, ‘Adobe Systems Inc.’, ‘Microsoft Corp.’, ‘(주)한글과컴퓨터’, ‘Autodesk Inc.’, ‘위너브라더스’, ‘영국 BBC one’, ‘MBN’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이성엽 분과위원장 대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9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90951호~9160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90951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으로, 민원인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 사이트에 입점한 다른 판매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은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 상품 판매페이지에 사용된 사진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였음.

(국민신문고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해당 민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특허청으로 이송되었고, 특허청에서 다시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어 상표 침해 및 위조상품에 관한 부분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미지 도용에 관한 부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처리하고 있음.

(불법복제물 게시물 및 민원인이 제출한 원본 사진을 제시하면서)지금 보시는 사진은 민원인이 침해를 주장하는 이미지의 원본임. 파일 속성을 보시면 사진 찍은 날짜가 2018. 3. 31. 오후로 확인됨.

모델의 선정, 포즈, 구도 등을 본다면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음. 하지만 쇼핑몰의 제품 이미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거래 대상은 문제가 되는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제품임.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내 제품 광고 사진 또는 제품 사용 관련 이미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품판매 게시물 내 사진 이미지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바 있음.

심의위원회는 대심제 구조가 아니어서 민원인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문제가 되는 이미지의 진정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이성엽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9095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기존의 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제품 판매자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위원회는 쇼핑몰, 오픈마켓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행정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입장임. 쇼핑몰 이미지가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이 원본이라고 제출한 사진파일만 가지고는 민원인이 저작권자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임. 예컨대 민원인이 제품 제조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활용한 것이거나, 외주업체를 통해 촬영한 사진이거나, 병행수입제품일 가능성도 있음. 과거에 동업이나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일수도 있고, 제조사와 제3자가 별도의 계약을 한 사안일 수도 있으나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즉 민원인 회사가

해당 이미지의 권리가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음.

- A 위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건과 같은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저작권을 이유로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의문이고, 저작권침해가 의심되는 사진을 이용했다고 해서 제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하게 된다면 판매자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남. 법원에서 가처분을 하게 된다면 양 당사자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수회에 걸쳐 공방이 이루어 질 것임. 우리 제도는 대심제가 아닌 관계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음.

- C 위원: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소명이 부족하여 저작물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저작권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 제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보다 행정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임. 이 제도의 악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 A 위원: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물 침해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요함. 방송물이나 영화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이

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민사 이슈가 있어 우리가 선불리 개입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동의함.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여타의 저작물과 쇼핑물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용한 이미지는 입증의 정도가 다를 것임. 저작물의 권리자나 권리침해관계 입증이 미흡하다는 점, 쇼핑물의 제품 판매 게시물에 시정권고를 할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A 위원: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물 내 이미지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쇼핑물의 제품 판매 게시물에 시정권고를 할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해야 할 것임.
- B 위원: 민원인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지의 저작 재산권자가 불분명하고, 쇼핑물의 제품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면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결 의견임.
- 이성엽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0951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9095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블로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0953호~9160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영화 '반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0953호는 화제의 영화 '반도'임. 영화 '부산행', '서울역'의 연상호 감독의 작품임. 부산행의 속편 성격임. 주연 배우는 강동원, 이정현임. 2020. 7. 15.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이며 8. 6. 기준으로 누적관객수는 359만 명 이상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개봉해서 인기를 얻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상 속 영어자막과 ©○○○○○○○○○○○○라는 사행성 사이트의 워터마크가 확인됨. 영상 화질도 좋지 않은데 해외 영화 상영관에서 불법으로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큼. '◇◇◇◇◇'라는 회원 수가 5명인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밴드 소개 하단에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밴드 소개와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어 개방형 밴드임을 알 수 있음.
- (게임 '스트리트 오브 로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1378호는 '스트리트 오브 로그'라는 인디 게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제작은 맷 다브로브스키(Matt Dabrowski), 배급은 타이니빌드 게임즈(tinyBuild)에서 하였고, 2019. 7. 13. 출시되었음. 정품 게임은 스팀에서 20,500원에 이용 가능함.
- (컴퓨터 프로그램 'Adobe Premiere Pro CC 2015 ~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1490호 Adobe Systems Inc.의 Premiere Pro는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 CC 2020 버전은 2019.

- A 위원: 동의함.

- 이성엽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0953호~9160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0951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90952호~9160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이성엽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14.

분과위원장 대행 이성엽

위원 권헌영

위원 박정인